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3. 5. 2.
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3년 4월 18일

나. 발 의 자 : 오현숙 의원 외 4인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4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제17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(2013년 5월 1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 : 오현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영등포문화재단을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신설하는 등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영등포문화재단을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정하여 신설함.

(안 제3조제2항제2호사목)

2)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」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」으로 변경함.(안 제3조제2항제3호라목)

3) 문화재단의 예산안 및 결산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기구 직제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회건설위원회의 소관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함.

(안 제3조제3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기영)

-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 개정사항으로
 - 안 제3조제2항2호 행정위원회의 소관에 문화재단을 추가함.
 - 안 제3조제3항에 문화재단의 예산안 및 결산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기구 직제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회건설위원회의 소관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함.
-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등포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위원회 소관 부서를 반영하고 우리구 의회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으로 상위법과 관련된 법체계나 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3년 4월 일

발 의 자 : 오현숙 의원 외 인

1. 제안이유

영등포문화재단을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신설하는 등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영등포문화재단을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정하여 신설함.

(안 제3조제2항제2호사목)

나.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」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」으로 변경함.(안 제3조제2항제3호라목)

다. 문화재단의 예산안 및 결산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기구 직제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회건설위원회의 소관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함.

(안 제3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합의사항 없음

라.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붙임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(이하 “문화재단”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

제3조제2항제3호라목 중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제2호사목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 관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는 경우에 그 내용 중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사회건설위원회의 소관으로 한다.

④ 제2항제3호라목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관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는 경우에 그 내용 중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행정위원회의 소관으로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사고가 있을 때”를 “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”로 한다.

제12조제4항 중 “사고가 있을 경우”를 “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에 따라 <u>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</u>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수) <u>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</u> (이하 “의회” 라 한다)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수) <u>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) ① (생략)</p> <p>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행정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바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3. 사회건설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다.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 <u>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</u>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사. 서울특별시영등포문화재단(이하 “문화재단” 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 <u>서울특별시영등포구 시설</u></p>

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

③ 제2항제3호라목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관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는 경우에 그 내용 중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행정위원회의 소관으로 한다.

<신 설>

제11조(부위원장) ①·② (생략)

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

제12조(소위원회) ① ~ ③ (생략)

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

관리공단-----

--

③ 제2항제2호사목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 관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는 경우에 그 내용 중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사회건설위원회의 소관으로 한다.

④ 제2항제3호라목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관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는 경우에 그 내용 중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행정위원회의 소관으로 한다.

제11조(부위원장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-----

-----.

제12조(소위원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-----

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⑤ (생략)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